

2009년도  
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

2009. 7

직불금은 쌀소득을 보전하는 보조금이므로  
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급받아야 합니다.

농림수산물자료실



0017742



농림수산물부

[http : //www.mifaff.go.kr](http://www.mifaff.go.kr)

## - 목 차 -

■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	1
I . 사업개요	1
II 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	4
III 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	11
IV .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(안)	44



#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 적

- 『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』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
- 특히, DDA/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

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
  -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
    - \*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
    - \*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지급
  -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85%에서 고정직접지불금 단가(쌀 80kg 가마당)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(1ha당 쌀 61가마 기준)
-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”를 설치,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
  -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, 신청자·수령자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
-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, 목표가격 변경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(위원장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)를 운영
  - 논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읍·면·동에 심사위원회 설치

### 3. 근거 법령

-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### 4. 성과목표 및 지표

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(고정직접지불금, 변동직접지불금)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(170,083원/쌀80kg)의 97.5% 이상 유지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목표치 산출시기	측정방식
		'06	'07	'08		
▪ 농가소득지지율(%)	97.5	98.0	97.5	97.5	2010.2	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(수확기 쌀값+직불금)을 백분율화

\* 수확기 : 당해연도 10월1일 ~ 다음연도 1월31일

### 5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6년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09년이후
합 계	3,734,953	1,149,042	990,925	776,397	992,513
보 조	3,734,953	1,149,042	990,925	776,397	992,513
○ 고정직불금					
- 보 조	2,823,400	712,004	711,803	708,750	704,877
○ 변동직불금					
- 보 조	912,553	437,038	279,122	67,647	287,636

\* 고정직접지불금은 당해 연도 12월

변동직접지불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지급

## 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지급대상 농지(법 제5조)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재배에 한함)에 이용된 농지 (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)

#### 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
①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.

다만,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농림수산물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

② 「농지법」 제34조·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(농지전용허가·신고·협약이 의제(擬制)되는 경우 포함)

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.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
-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

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·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

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)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(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)

나. 다만,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.

- ① 경지정리사업, 간척사업 등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
- ② 태풍이나 홍수 등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

\*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·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

다.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

-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,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
- \* '09.10.1일까지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은 『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』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(이하 같다)

## 2. 지급 대상자

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**논농업에 종사**(휴경 포함)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

\* **논농업에 종사** :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) 하는 것을 말함

가.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(後繼農業經營人)으로 선정된 농업인
- \* '09.10.1일까지는 『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』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본다.(이하 같다)
- ②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(專業農業人)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
-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(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농업인등

㉠ 농업인: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

㉡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: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

④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(휴경하는 경우를 포함)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. 다만,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

㉡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(主業)으로 하는 농업인

나.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

다. “나”에 해당자 중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“농촌”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“농업을 주업”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,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

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
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,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(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 포함)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

라.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,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

-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-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
- ③ 「농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(해당하는 농지분)
-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(해당하는 농지분)
-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
### 3. 신청 자격

-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

### 4.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

#### ○ 고정직접지불금

- 지급대상 농지에서 '01년 이후 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,
- 아래의 “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”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
  -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
  -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
  - 농지주변 용·배수로 유지 및 관리
  -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

#### ○ 변동직접지불금

-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,
-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  - 농약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
  - 화학비료 :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



## 5. 지원형태 및 기준

### 가. 지원형태

- 고정직접지불금 : 지방자치단체 보조
- 변동직접지불금 : 직접수행

### 나. 재원

- 고정직접지불금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특세전입금계정)
- 변동직접지불금 :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

### 다. 지원기준

- 고정직접지불금
  - 지급기준 :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
  - 지급단가(농림부 고시 제2006-48호)
    - \*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(m<sup>2</sup>당 74.6원),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(m<sup>2</sup>당 59.7원)
  - 농가당 지급금액 : 지급단가(원/m<sup>2</sup>) × 대상농지면적(m<sup>2</sup>),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
  - 지급시기 : 2009년 12월
- 변동직접지불금
  - 지급기준 :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
  - 목표가격 : 170,083원/쌀80kg('05-'12년산 적용)
  - 지급단가 :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%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

◆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(80kg기준)

【(목표가격 -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) × 85%】 - 고정직불금 단가

- 당해연도 수확기 (당해연도 10월1일~다음해 1월31일) 산지 전국 평균 쌀값
- 고정직불금 단가 :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평균한 가격
- 농가당 지급금액 : 변동직불금 지급단가(원/80kg) × 61가마 (80kg) × 벼재배면적 m<sup>2</sup>/10,000m<sup>2</sup>,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
  - ha(10,000m<sup>2</sup>)당 생산단수는 61가마/쌀80kg로 고정
- 지급시기 : 2010년 3월중

### 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# 1. 사업신청 단계

##### 가. 사업시행지침 수립·통보 : 농림수산식품부

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,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·도지사 및 관련 기관·단체장에게 시달
-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

##### 나. 홍보 및 사업 추진: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도(시·군·구)는 관련 기관(농업기술센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 등)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·실시
  - 시·군·구 홍보지, 지방지 등에 게재
  - 반상회,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

##### 다. 등록신청서 제출(법 제7조제1항): 농업인등

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
  - 등록신청 기간 : 2009.6.26 ~ 2009.7.31일
- 등록신청 방법
  -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·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
  - 경작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)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장에게 제출
  - \*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\* 신청인의 주소지 읍·면·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,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신청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
  - \* 관내경작자 :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(신청인의 주소지 읍·면·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)

-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: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.  
다만, 읍·면장이 농지원부(農地原簿)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.
- ① (해당 농지)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
⇒ '05-'08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출 생략(AgriX시스템에서 확인 예정), 그 외의 농지는 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 등 증명서 제출
- ①-1 법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
⇒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
- ② (해당 농지)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
⇒ 가경작 계약서,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, 토지대장, 농지원부,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
- ②-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
⇒ 경지정리 편입확인서,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,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
- ③ (신청인)이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, 전업농업인,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
⇒ AgriX시스템에서 확인(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)
  - ㉡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(휴경하는 경우 제외)  
⇒ 1만(5만)제곱미터 증명 : 농지원부, 토지대장,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계약서 등  
⇒ 경작 증명(2년 이상) : 신청자 명의의 '07~'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·농산물 판매 영수증,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,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(3명) 등
- \* 면적계산(1만 또는 5만제곱미터) : 타 시·군·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

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·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.

⇒ 2년 이상 거주 확인 :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등

⇒ 농업인 증명 :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,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,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

㉔-1 다만,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(主業)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

⇒ ㉔-1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

④ (신청인)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⇒ 제출 생략(AgriX시스템에서 확인), 농촌지역 및 농촌 외의 지역 경작자 모두 적용

④-1 다만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(주된 사무소)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

\*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: 읍·면·동장

㉕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
⇒ 면적 증명서류 : 농지원부, 토지대장,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계약서 등

⇒ 경작 증명서류 :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, 농산물 판매 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, 벼 등 계약재배 계약서,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(3명) 등

⇒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확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되, 확인이 아니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제출

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
\*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: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

⇒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

-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·대금입금 내역 영수증
-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
- 소규모 도정공장(일명 방앗간)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(간이영수증은 제외)
-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
-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
-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

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,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(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결한 읍·면·동 내의 농지 포함)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

⇒ 2년 이상 거주 확인 : 주민등록등본 등

⇒ 경작 증명서류 : 신청인 명의의 '07~'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·농산물 판매 영수증,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,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(3명) 등

⑤ (해당 농지)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

⑤-1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 : 경작사실 확인서(별지 제1호의2·3 서식)

⑤-2 다음의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,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

㉖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(농협의 전산 출력물·영수증, RPC, 택배영수증 등, 간이영수증은 제외)

㉗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·농약·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행정기관(농협)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,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,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)

㉘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(RPC와 농업인간 계약서, 일부위탁 계약서 등)

㉙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

\* 영수증 등 입증서류 : 신청자 명의로 된 것,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것

\* 2개 이상 서류 : 농산물 판매영수증(1), 농약구입 영수증(1)을 의미함

\*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·면·동장이 확인



⑥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「소득세법」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. 다만,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
 ⇒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

⑦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(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)

⇒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계약서, 농지사용료 입금증, 농장주 확인서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

\* 국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,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자로부터 확인

## 2.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확인 단계

가. 등록 신청 및 전산 입력 : 읍·면·동장

○ 신청 및 입력기간 : 2009.6.26~7.31일까지

○ 신청 및 입력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담당자

\* 확인 사항 :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 등

\* 협조요청 : '09년부터 AgriX시스템에 통합하여 사업관리 예정, 전국에서 접속시 입력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확인 후 전산입력

○ 해당 농지여부 확인

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재배에 한함)에 이용된 농지여부

- 다만,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에 해당되면 지급대상

☞ 경지정리사업, 간척사업 등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태풍이나 홍수 등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

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

\*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,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

### 〈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〉
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)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
-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,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 없음

###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
☞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.

다만,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

☞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,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(농지전용허가·신고·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)

☞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.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
-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

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·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

☞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·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(5년 이내)

- \*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,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
- \*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·수령”하였을 경우,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·신청할 수 있음

○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

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

- ☞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
\*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면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
- ☞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(법인 5만제곱미터)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
- ☞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·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

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

②-1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, “농촌”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

- \* 현재 Agrix시스템에 “시의 동은 도시지역”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신청자의 지역을 확인 후 수정 입력

《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》

-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·면지역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)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
  - 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녹지지역 , ㉡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
  - ㉢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- ④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.8.14.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나목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(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

☞ 같은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(법인 5만제곱미터)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

☞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(법인:4천5백만원) 이상인 농업인등

<농산물의 개념>

- 식량작물, 채소작물, 과실작물, 화훼작물, 특용작물, 약용작물, 버섯, 양잠업 및 종자·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은 제외)과,
-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)의 사육업·증식업·부화업 및 증축업(증축업) 및
- 육림업(자연휴양림·자연수목원의 조성·관리·운영업을 포함), 임산물 생산·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

☞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,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

###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☞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

\*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한 자는 일괄 확인 예정

☞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

\*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한 후,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\* 1천제곱미터 : 타 시·군·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

☞ 「농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(해당하는 농지분)

☞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(해당하는 농지분)

☞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
### ④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

⇒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경작사실 확인서(별지 제1호의 2·3 서식)

### 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목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,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

⇒ 제출하는 서류 중 농협에서 비료·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제출 생략 가능(일괄 확인 예정)

## 나.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: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·군·구

- 정보공개 내용 : 성명(법인명), 농지지번, 신청면적
- 정보공개 :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·군·구의 홈페이지
- 정보공개 기간 : 등록신청을 종료한 후 30일간
- 정보공개 방법
  - 열람하고자 하는 자 :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
  - \*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-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
  - 이의신청 기관 : 시장·군수·구청장
  - 이의신청 대상 :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
  - \*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- \*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

## 3. 지급대상자 선정단계

### 가. 신청자 및 대상농지 확인 : 읍·면·동장

- 확인기간 : 2009. 접수시 ~ 8.30
- 현지조사 등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,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
- 시·군·구 내에서 2개 읍·면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
  -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·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
  - 다만, 다른 읍·면·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·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·면에 현지조사를 의뢰
  -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·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



## ○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원장 : 읍·면·동장
- 위원 :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  - 읍·면·동 관할 리·통의 마을대표
  - 해당 읍·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
  - 해당 읍·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
-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.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
  -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
  -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
  -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임기 : 2년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,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
  -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
  - 사망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
  -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
  -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
  -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

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, 이의신청서 확인,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, 읍·면·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,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AgriX시스템으로 시·군·구청장에게 2009.8.30일까지 제출

나.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발급권자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발급일 : 2009.9.15

○ 발급요건

-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
-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
  -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
  -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
  -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여부
  - 동일 지번에 이중 등록신청 여부 확인 등

○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: 별지 제2호 서식

- 등록증번호는 시·군·구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, 시·군·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.

\* 읍·면·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

○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: 별지 제3호 서식

-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, 등록증 발급

○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

-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(별지 제7호 서식)에 기재하고, 해당자에서 그 사실을 통보(별지 제8호 서식)

⇒ 등록증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 (생략 가능), 읍·면·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

-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중요한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도착되도록 필히 발급 및 확인

○ 시·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(별지 제9호 서식)

○ 시·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제외자 현황 보고(별지 제10호 서식)

○ 등록증 수정

- 수정사유 :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
- 신청기간 : 발급받은 날부터 **14일 이내**
- 신청기관 : 발급받은 읍·면·동장을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- 신청서류 :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
- 결과 조치 :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

다.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: 등록자 등

○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기간 : 등록증 발급후 ~'09.10.15

○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

- 변경등록 신청 :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신청
- 변경등록 신고 :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(讓受), 임차 또는 사용차(使用借)하는 농업인등

○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: 읍·면장을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

\* 변경등록 신청서 : 별지 제4호서식, 변경등록 신고서 : 별지 제5호서식

〈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〉

① 발급된 등록증

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. 다만, 읍·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.

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

㉡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.

다만,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(추가 등록신청)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(추가 등록신청)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 1) 또는 나목1)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.

㉢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

### 〈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〉

-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(讓受)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. 다만, 읍·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.

### 〈변경등록증 발급 등〉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(신고)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(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)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, 읍·면장을 거쳐 신청(신고)인에게 등록증을 발급.
-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.

- ◆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농외종합소득금액 확인(국세청)
- ◆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, 신청 면적, 주소 등 최종 확인

### 라.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확정 기준일 : 2009. 11. 1
- 확정내용 :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상자, 농지면적,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된 후, 그 결과를 시·도에 보고
  - 시·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
  - \*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, 시·도에서는 기관장 결재후, 관인 날인
  - \*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: 별지 제11호 서식
- 확정효과 :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음
  - 농식품부에서는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고정직불금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·도에 자금 배정

## 4. 이행점검 단계

### 가.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 : 한국농어촌공사

-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
  - 주관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(본사는 세부점검기준 수립·시행)

### ○ 점검기간 : 등록신청 내용 공개후 ~ 9.30

- 점검대상 농지 : 시·군·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자 현황 출력
  -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시·군·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

- 한국농어촌공사 시·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

\* 법 제12조에 의거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, '09년도에는 법률개정 등으로 지연된 점을 감안 등록신청 단계에서 실시

\* ID를 부여받은 시·군지사는 해당 시·군·구 등록신청 농지 전체 출력 → 관할 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→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→ 조사 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→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

### ○ 점검사항

####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

-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
-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
- 농지주변 용·배수로 유지 및 관리
-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

#### -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

### ○ 점검방법

- 한국농어촌공사 시·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

-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

\* 시·군·구 :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

\* 읍·면·동 :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



- 특히,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
-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시 **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**하되, 경작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증빙서류(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)를 작성 비치함

○ **점검결과 입력** : 점검결과는 **AgriX시스템에 입력**

-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, **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**
-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,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(별지 제12호 서식)

○ **점검결과에 대한 수정**

-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·군·구청장(읍·면·동장)이 **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**
-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,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
- \*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

○ **점검결과에 대한 조치**

- 시·군·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(시·군지사)에서 입력한 점검결과,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\*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,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**나. 토양검사 : 농촌진흥청**

○ **주관기관** : 시·군농업기술센터

- 농업기술센터가 없는(23개 시·군) 시·군은 도 농업기술원(센터)에서 수행
- 농촌진흥청장은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”을 수립·시행
- 시·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”을 수립·시행

○ **검사항목** : 유기물, 유효인산,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·부적합 판단

○ **검사시기** : 수확직전 ~11월 상순

- **검사대상 농지 : 등록신청 농지**(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, 2009년에는 제도개선으로 지연된 점을 감안 등록신청 농지)
  -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시·군·구청장은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 (**AgriX**시스템으로 전송)
  -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**AgriX**시스템 입·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
- 토양검사 표본선정
  - 시·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”에 근거하여 시행
  - '07년도, '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
  -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
  - \*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
- 토양검사 시료채취
  -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,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
- 토양검사 방법
  - 농촌진흥청의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”에 근거하여 실시
-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

구 분	유기물 함량 (g/kg)	유효인산함량 (mg/kg)	치환성칼리함량 (cmol <sup>+</sup> /kg)
일반 농지	11~40	170이하	0.5이하
간척지 농지	11~35	140이하	0.9이하
석회암지대 농지	11~50	170이하	0.5이하
특이산성 농지	20~50	170이하	0.5이하

\*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

-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
  -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(1차년도 토양검사) : 적합
  -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(2차년도 토양검사)

구 분	관 정
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<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	적 합
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≥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	부적합

-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(2차년도 토양검사)

구 분	관 정
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>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	적 합
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≤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	부적합

○ 토양검사 판정기준

-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“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
-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

○ 토양검사 결과 통지

- 시·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2.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·군·구청장에게 통보(별지 제13호 서식)
- 농촌진흥청에서는 시·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(별지 제13호 서식)
- \*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,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,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(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“해당사항 없음” 통보)
- \*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

○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

- 엽분석 방법 :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
-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

○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

- 시·군·구청장은 관내 시·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## 다. 농약잔류검사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- 검사기간 : 등록신청을 마감한 후 ~ 11.30
- 주관기관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달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·군출장소장은 시·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·시행
- 농약잔류검사 대상 : 등록(신청)한 농지
  -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시·군·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의뢰(AgriX시스템으로 전송)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·출장소)은 AgriX시스템 입·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
  -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,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
  - '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
- 시료 채취
  - 논·밭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
  -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·건조·제현 후 현미 1~2kg 분석의뢰
- 농약잔류검사 방법
  -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, “부적합”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·군·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
-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
  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
-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
  -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
  -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·군·구청장에게 통보(별지 제14호 서식)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(별지 제4호 서식)
-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
  - 시·군·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·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(농가)에 대해서 『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』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

## 5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

### 가. 자금 배정 : 농림수산식품부

- 고정직접지불금
  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·도에 배정 통보
- 변동직접지불금
  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“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”의 위탁기관인 (농업협동조합중앙회)에 통보

### 나.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지급시기 : '09년 12월
- 지급요건 : 농지의 형상(形狀)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
- 금액산정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
  - 농업진흥지역 746,000원/1ha, 농업진흥지역밖 597,000원/1ha
- 시·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·군·구에 전금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(등록자)의 계좌에 입금
  -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“고정직불”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
  - 필요시 읍·면·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
  -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·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
  - \*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입금하는 (농협)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,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
- 시·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(별지 제15호 서식)

#### 다.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지급시기 : 다음 연도 3월
- 시·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된 후 자금요청 (별지 제16호 서식)
  - 시·군·구청장은 (농협)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(별지 제17호 서식)
- 재원 :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
- 지급요건
 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
  -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
- 지급단가 :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
- 지급금액 :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×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(61가마)×벼재배 면적
  -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(700천원/ha)을 사용
  -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(가마당 80킬로그램)로 고정함.
-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
  - 농협은 농림수산물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
  -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·군·구청장에게 보고
  -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“변동직불”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
  -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·군·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금
- \*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입금하는 (농협)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,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

- 시·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(별제 제18호 서식)
- 시·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(별제 제19호 서식)

#### 라.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

-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
  - \* 현재 위탁기관 :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위탁 사무
  -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회계업무
  -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업무
  -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
  -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
  -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### 6.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

#### 가.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

- 정보공개 내용 : 성명(법인명), 농지지번, 신청면적, 수령금액
- 정보열람 기간 :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
- 정보열람 방법 :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·군·구 인터넷 홈페이지
- 열람하고자 하는 자 :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제공
  - \*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#### 나. 신고포상금 지급 : 시·군·구 및 농림수산식품부

-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,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(1월1일부터 12월31일)

- 신고 기간 :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31일까지
- 신고기관
  - 주무관청 : 농림수산식품부
  - 관계 행정기관 : 직불금을 지급한 시·군·구(자치구), 등록신청한 읍·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
- 신고서 : 별지 제20호 서식(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)
- 신고대장 :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(별지 제21호 서식)
- 조사절차
  -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,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에 이송
  - 시·군·구청장 :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→ 신고서류 확인 → 현지조사 → 피신고자 청문 →(필요시) 심사위원회 심사 → 판정(읍·면·동장) →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
- 재 원 :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(변경될 수 있음)
  - 신고자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
  -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시·군·구에 자금배정, 시·군·구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지급 제외자
  -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
  - 이미 신고된 자(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)를 신고한 사람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-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
  -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
  -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

**다.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: 시장·군수·구청장**

-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

**라.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: 시장·군수·구청장**

- 부당이득금 회수 :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,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
- 부당이득금 회수
  -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,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
  - 법 제13조제1항제2호(지급대상자 요건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
  - 법 제13조제1항제3호(농지처분 명령, 무단점유) 제4호(형상유지, 토양·농약검사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(필지)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
- 납입고지서 :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, 납부기한, 납부기관 등을 분명히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
  - \*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
- 회수절차
  - 고정직불금 회수 : 반납고지서 발급(시·군·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시·군·구 계좌 → 시·도 계좌 → 농특회계 계좌(납입)
  - 변동직불금 회수 : 반납 통보(시·군·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농협 계좌 →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계좌
- 가산금 부과 :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

- 증가산금 부과 :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-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
  -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.
-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.
- 시·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(별지 제22호 서식)

#### 마. 벌칙 사항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
  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
  -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
  -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
#### 바. 사업추진상황 점검

- 각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·점검
  - 필요할 경우에는 시·도와 시·군·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  - ※ 지급면적 초과신청,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, 지적불일치 필지 등
-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

## 7. 보고 사항

### 시·군·구

- 시·군·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(시·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)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(별지 제9호 서식) : '09.9.30일까지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(별지 제10호 서식) : '09. 10월말까지
  - 2009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(별지 제11호 서식) : '09. 11월초순
  - 토양검사 결과(별지 제13호 서식) : '09. 12. 15일까지
  -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(별지 제15호 서식) : '09. 12월말까지
  -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(별지 제16호 서식) : '10. 2.15일까지
  -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(별지 제18호 서식) : '10. 4월말까지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(별지 제19호 서식) : '09. 12월말까지
  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(별지 제22호 서식) : '09. 12월말까지
- 시·군·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
  -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(별지 제17호 서식) : '10. 2.15일까지

### 한국농어촌공사

- 한국농어촌공사 사장(시·도본부장, 시·군지사장)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(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에게 보고
 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(별지 제12호 서식) : '09.11.15일까지

### 농촌진흥청

- 농촌진흥청장(시·군농업기술센터소장)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(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에게 보고
  - 토양검사 결과(별지 제13호 서식) : '09.12.10일까지

##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(지원장, 출장소장)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물부 장관(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에게 보고
  - 농약 잔류검사 결과(별지 제14호 서식) : '09. 12월말까지

## 농협중앙회

-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
  - 기금결산보고서 : 회계연도 2월15일까지(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에게 보고

### 《“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” 설치·연중 운영》

- 농림수산물부 및 시·도(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),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
-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·군·구에 7일 이내 통보, 해당 시·군·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.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
- \*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: 붙임참조

## 8. 성과측정단계

-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(수확기 쌀값+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) 비율을 평가
  - 평가기관 : 농림수산물부
  - 성과지표 : 농가소득지지율(%)
  - 측정산식 : (사업연도 실적/기준연도 목표가격) × 100
  - 성과지표 측정(익년 2월) :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지지율 측정
  - \* 수확기 : 당해연도 10월1일 ~ 다음연도 1월31일
-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,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
  - 조사시기 : 하반기
  - 조사대상 :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
  - 조사방법 :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
  - 조사기관 : 농림수산물부

## 9. 사업평가

-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(수확기 쌀값+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)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
  -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.5%이상 유지하는지 평가
- 평가기관 : 농림수산식품부
- 평가기간 : 익년도 2월
- 평가대상 : 농가소득지지율(%)
- 평가절차
  -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이 산출되는 익년도 2월에 농가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
    - \* 수확기 : 당해연도 10월1일 ~ 다음연도 1월31일
  - 측정산식 : (사업연도 실적/기준연도 목표가격) × 100

## IV.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(안)

- 신청서 제출기간 : '10.5.1 ~ '10.6월말까지
- 신청서 제출기관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- 신청농지
  -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을 재배한 농지
- 신청자격
  -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(휴경 포함)하는 농업인·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
  - 다만,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(0.1ha)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격이 없음
- 신청절차
  -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,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하고,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

## 사업추진절차

업무흐름	시 기	주 요 내 용
① 사업등록신청 ↓	('09.6~ 7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(농림수산식품부)</li> <li>· 사업설명 및 홍보(시·도, 시·군·구)</li> <li>·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(읍·면·동장→시·군·구청장)</li> </ul>
② 신청자 명단 공개 ↓	('09.8월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시·군·구)</li> </ul>
③ 신청내용 등 확인조사 및 등록증 교부 ↓	('09.8~ 9.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</li> <li>· 대상농지·농업인·무단점유 여부, 면적, 비재배 면적,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(읍·면·동)</li> <li>· 정보제공 동의 여부, 등록 제한자, 농외 소득자 지급 제한(증명서 제출자) 여부 확인(읍·면·동장)</li> <li>·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(비재배 등) 상황점검(농어촌공사) → 확인조사 결과 시·군·구청장에게 제출(읍·면·동장)</li> <li>· 읍·면·동장을 통해 등록증 교부(시·군·구)</li> <li>* 등록 제외자 사유,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</li> <li>· 전산입력 결과 인쇄, 우리부에 1차 보고(시·도)</li> </ul>
④ 이의(변경)신청 기회 부여 ↓	('09.9.15~ 10.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등록내용 수정사항 신고(시·군·구/읍·면·동)</li> <li>· 종합소득금액(국세청 협조) 확인</li> <li>·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(비재배 등) 점검 결과 입력(농어촌공사)</li> <li>· 등록변경 사항 신고 및 처리</li> </ul>
⑤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↓	('09.11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급대상자 확정(시·군·구)</li> <li>·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요청(시·군·구)</li> </ul>
⑥ 이행상황 점검 ↓	('09.8~ 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토양검사(시·군 농업기술센터)</li> <li>· 농약잔류검사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</li> </ul>
⑦ 고정직불금지급 ↓	('09.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(시·군·구)</li> </ul>
⑧ 변동직불금지급 ↓	('10.3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(시·군·구)</li> <li>- 지급대행 : 농협중앙회(시·군지부)</li> </ul>
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	('10.3월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식품부 홈페이지(시·군·구)</li> <li>· 신고포상금제도 운영(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,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)</li> </ul>

[별표 2]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(제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,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지급제한기준	등록제한기간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	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5년
나.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)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(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2)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	법 제13조 제1항제2호	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
다.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) 「농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2)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	법 제13조 제1항제3호	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
라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4호		

<p>1)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·관리할 것</p> <p>2)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</p> <p>가)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</p> <p>나) 농지 주변의 용수로·배수로를 유지·관리할 것</p> <p>다)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</p> <p>3) 2)가)부터 다)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</p>		<p>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</p> <p>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/2 감액</p> <p>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</p>	
<p>마.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</p> <p>-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</p>	<p>법 제13조 제1항제4호</p>	<p>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</p>	
<p>바.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</p> <p>1)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</p> <p>가) 농약: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</p> <p>나) 화학비료: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</p> <p>2) 1)가) 및 나)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</p>	<p>법 제13조 제1항제4호</p>	<p>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/2 감액</p> <p>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</p>	

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															
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	처리기간										
주소					90일										
① 신청인	성명(법인명) 전화번호		주인(법인)등록번호		-										
	농지 소재지		⑤ 면적(m <sup>2</sup> )		대상농지여부										
음·면 리·동	지번 (임시 지번)		③ 지목		농업진흥 지역 안		농업진흥 지역 밖		⑥ 비 재배	비 외 작물 재배	휴경	⑦ 1998년~ 2000년 재배작물	⑧ 1997년 이전 농업 기간	⑨ 농지진흥 등 여부	⑩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
	합계		④ 소유 (자, 타, 공유)		계좌번호		⑫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		회						
⑪ 입금계좌		은행		계좌번호											
<p>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>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>○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p>															
<p>성명(법인명), 농지지번, 신청면적, 수령금액은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.</p>															
<p>※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(제2쪽 참고)</p>															
<p>297mm×210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</p>															

※ 작성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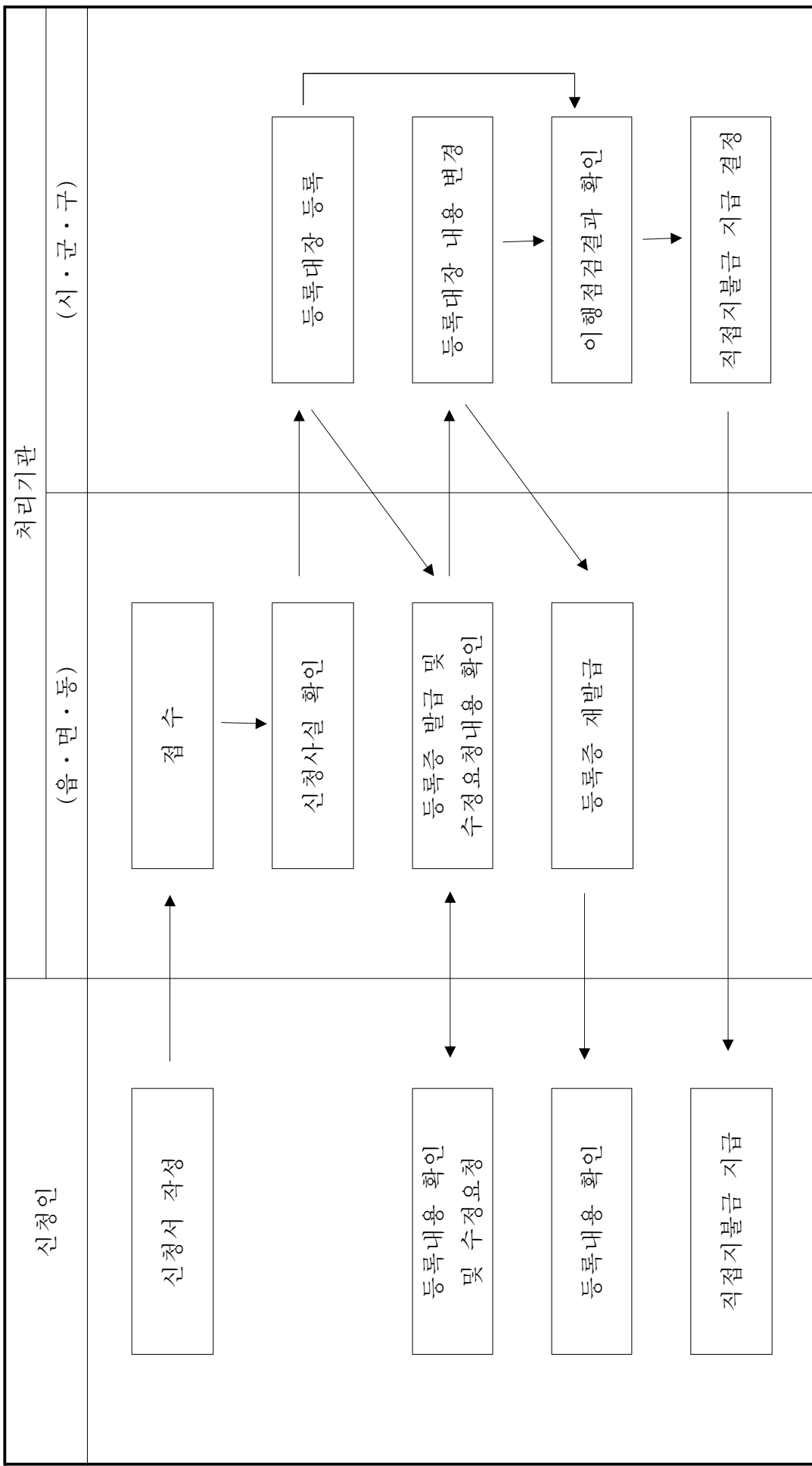
-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(범인을 포함한다)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.
-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.
-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(公簿)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.
-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자”로,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타”로,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공유”로 기록합니다.
-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.
- ⑥란은 신청농지의 비 재배면적, 비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.
-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“비”, “미나리”, “연근”, “왕골”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.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“기타”로 기록합니다.
- ⑧란은 ⑦란에 “기타”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, 미나리,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.
-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진흥허가를 받거나 농지진흥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진흥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“x”로 기록하고,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.
- ⑩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“○”로,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“x”로 기록하며,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.  
 가. 하천구역 안의 농지  
 나. 우천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
 다.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
- ⑪란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
- ⑫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.
- ⑬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.
-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, 비 재배면적, 신청농지·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·면·동장이 확인합니다.

※ 구비서류

- 1.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
 가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  
 1)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
 나.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
 2)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
 가.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(主業)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  
 나.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한 횟수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  
 다.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한 횟수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  
 3.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
 가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: 1)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
 1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·통장의 확인을 받되,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 
 2)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)  
 3) 종자·농약·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)  
 4) 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
 5)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
 나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: 다음 모두의 서류  
 1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·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,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  
 2) 가목2)부터 5)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
 4.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
 가.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. 다만,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.  
 나.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(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제3쪽)



###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

신청인	성명 (법인명)	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전화번호		
신청농지	농지 소재지			면적(m <sup>2</sup> )	농지이용면적(m <sup>2</sup> )		
	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	벼 재배	벼 외 작물재배	휴경

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.

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날짜	서명
농지소재지 ○○리(통)장		-		
* 이(통)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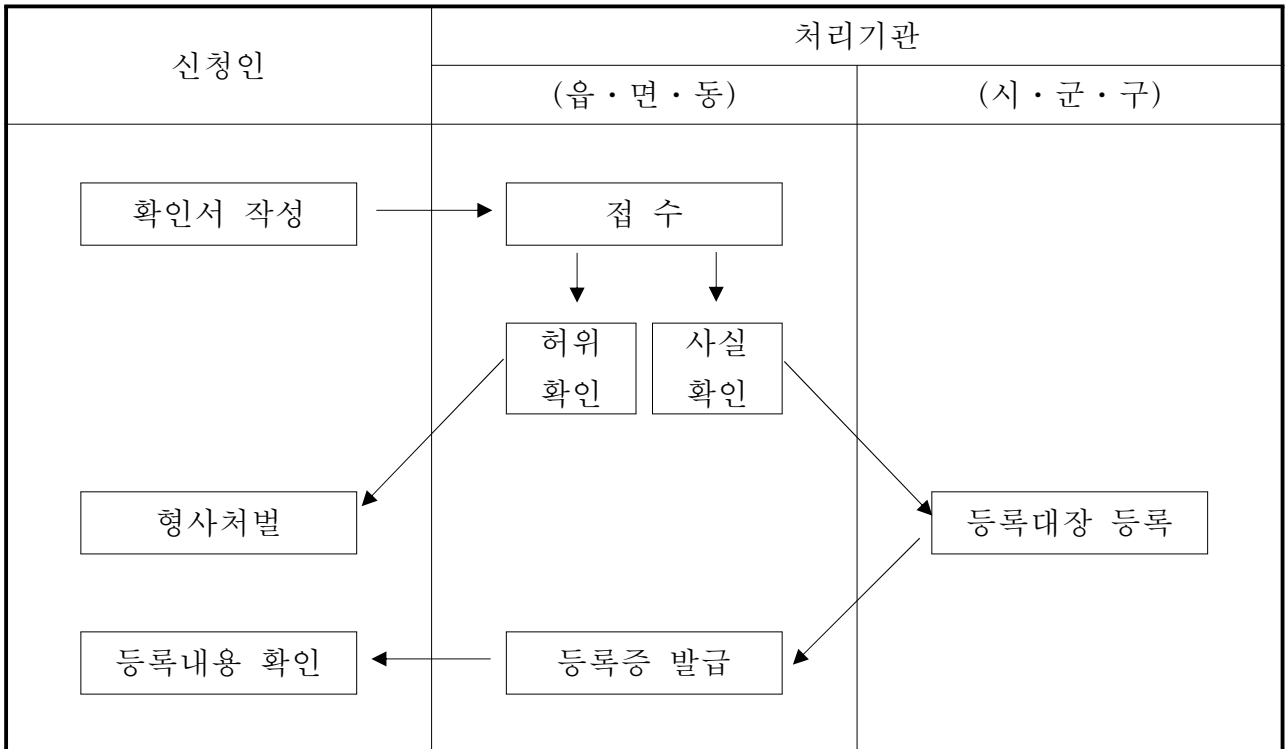
\*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※ 경작사실 확인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읍·면·동, 시·군·구
근거 법규	<p>○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(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읍·면장이 농지원부(農地原簿)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</p> <p>가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: 1)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</p> <p>1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·통장의 확인을 받되,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2) ~ 5) (생략)</p> <p>나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

※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##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

신청인	성명 (법인명)	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전화번호		
신청농지	농지 소재지			면적(m <sup>2</sup> )	농지이용면적(m <sup>2</sup> )		
	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	벼 재배	벼 외 작물재배	휴경

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.

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날짜	서명
농지소재지 ○○리(통)장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* 이(통)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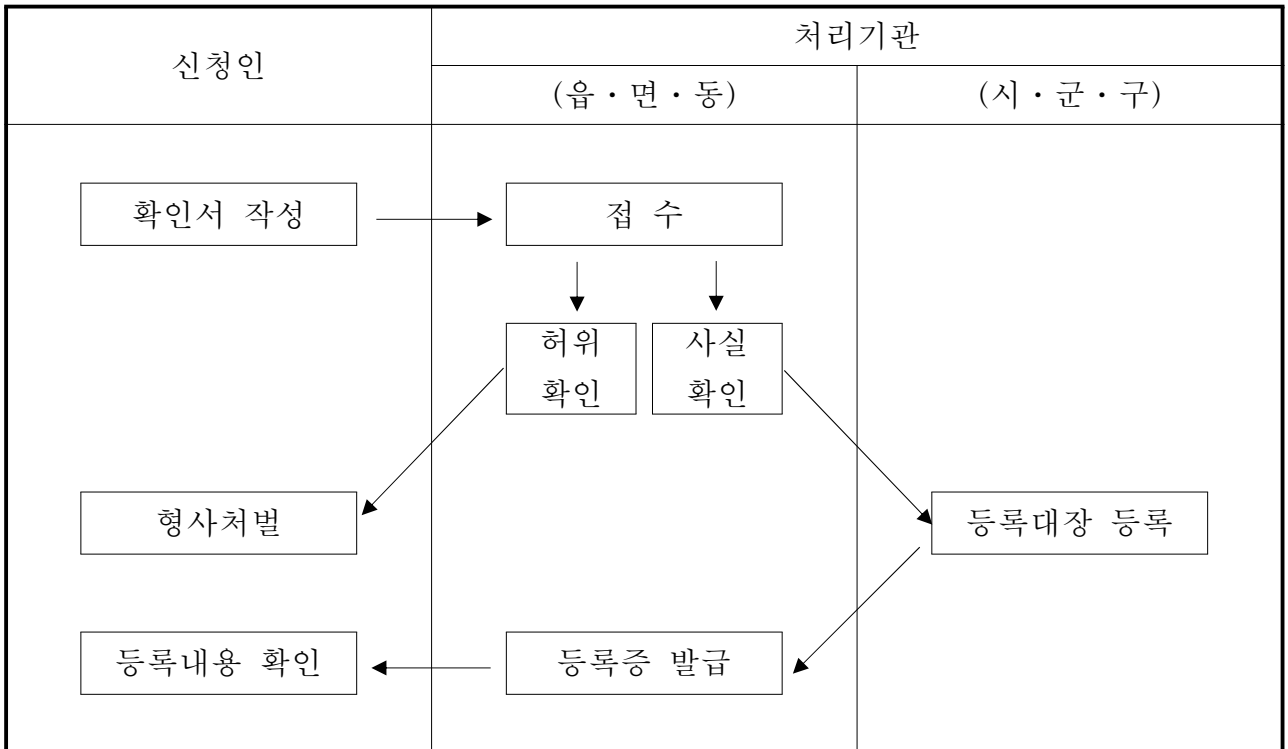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- \* 이(통)장을 제외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\*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※ 경작사실 확인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읍·면·동, 시·군·구
근거법규	<p>○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(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읍·면장이 농지원부(農地原簿)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: 다음 모두의 서류</p> <p>1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·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,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</p> <p>2)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

※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







※ 신청인 작성요령

- ①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(법인을 포함한다)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.
- ②란은 농지면적, 재배면적이 변경된 농지, 신규 신청하는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(양도)·임차(임대)·사용차(사용대)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.
-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(公簿)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.
- ④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자”로,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타”로,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공유”로 기록합니다.
-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.
-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비 재배면적, 비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.
- ⑦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.
- ⑧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비 재배면적, 비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.
- ⑨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“비”, “미나리”, “연근”, “양콜”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.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“기타”로 기록합니다.
- ⑩란은 ⑨란에 “기타”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비·미나리·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.
- ⑪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 중 농지진흥허가를 받거나 농지진흥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진흥허의를 가진 농지는 “×”로 기록하고, 그렇지 아니한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.
- ⑫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“○”로, 보상을 받은 경우는 “×”로 기록하며,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.  
 가. 하천구역 안의 농지  
 나. 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
 다. 산역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
 라.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
- ⑬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·임대·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.
-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, 비 재배면적, 신청농지·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음·면·동장이 확인합니다.

※ 구비서류 (3호의 서류는 음·면·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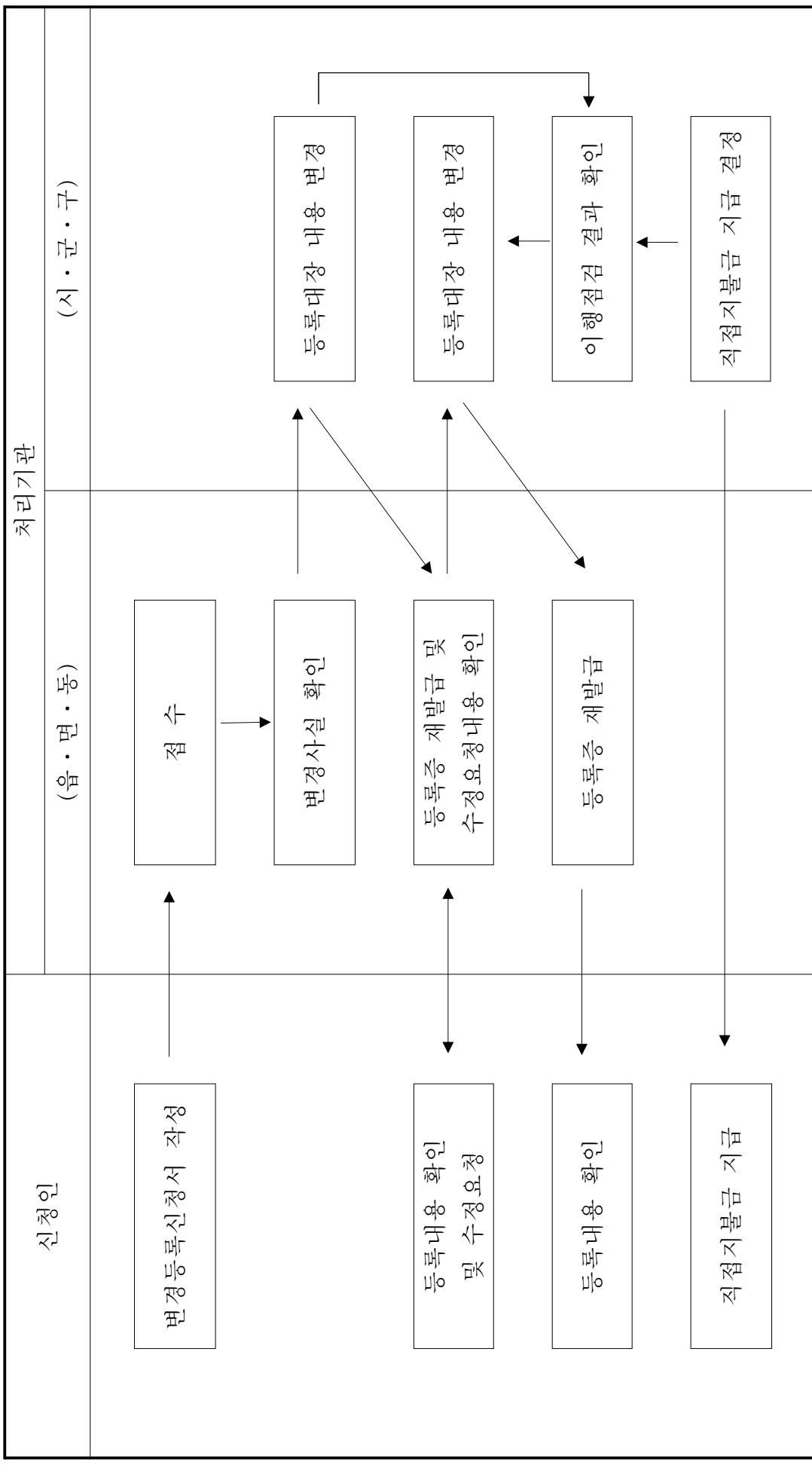
- 1. 발급된 등록증
- 2.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3. 등록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
  - 가.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1)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- 가)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
      - 2)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나.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(다만,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)가) 또는 2)가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)
    - 1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판내경작자: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
      - 가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판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    - 나)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)
      - 다) 종자·농약·비료 등 농작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)
      - 라) 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
    - 2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판내경작자 외의 자: 다음 모두의 서류
      - 가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판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·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,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
      - 나) 1)나)부터 라)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

다.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

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(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※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제3쪽)





※ 작성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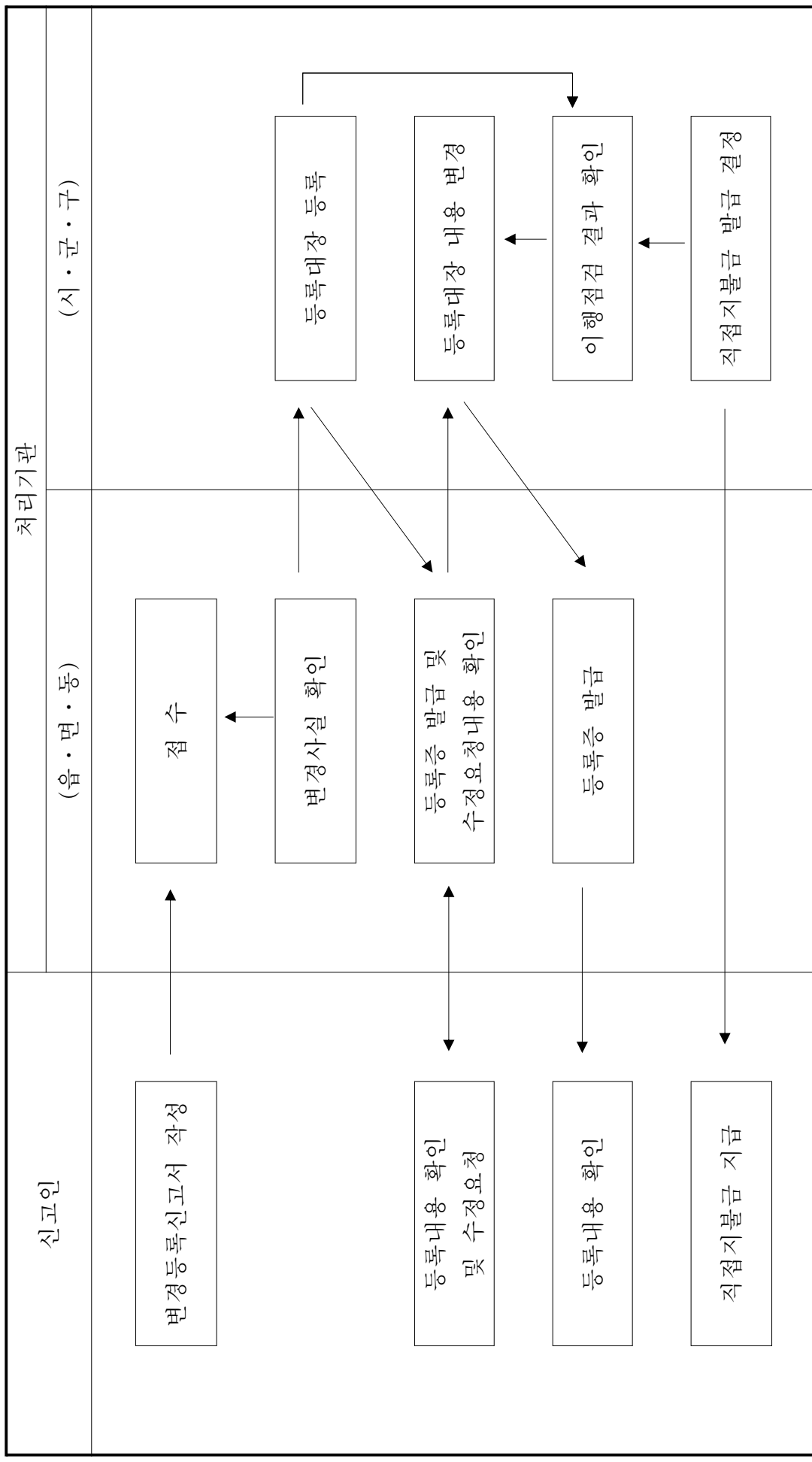
-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,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(법인인을 포함한다)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.
-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,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.
-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(公簿)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.
-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자”로,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타”로,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“공유”로 기록합니다.
-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.
-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비 제배면적, 비 외 작물 제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.
-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·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.
-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.
-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.
- ⑩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, 비 제배면적, 신청농지·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·면·동장이 확인합니다.

※ 구비서류

- 1.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(讓受)·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2.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
    - 가.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- 1)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- 2)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나.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
      - 1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: 1)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
        - 가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      - 나)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)
        - 다) 종자·농약·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(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)
        - 라) 비 등의 계약제배를 증명하는 서류
      - 2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: 다음 모두의 서류
        - 가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.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·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, 이·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
        - 나) 1)나)부터 마)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
- 다.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
- 1)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. 다만,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.
  - 2)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(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※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제3쪽)



###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전화번호			
신청농지	농지 소재지			면적(m <sup>2</sup> )	'98~'00년 재배작목			
	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	벼	연근	미나리	왕골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.1.1일부터 20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재배)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.

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날짜	서명
농지소재지○○리(통)장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-		

○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- \* 이(통)장 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\*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



[별지 제8호 서식]

번호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**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**

①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-				
	주소		전화번호							
②입금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							
③신청내용	농지 소재지		④농지이용면적(m <sup>2</sup> )			대상농지여부				
	읍·면	리·동	지번 (가지번)	벼 재배	타작물 재배	휴경	98~00년 재배작물	97년이전 논 농업	농지전용 등여부	개발예정 등 여부

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

- 제외사유 :

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시장  
군수 [인]  
구청장

\*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

시·군·구	등록 현황		농업진흥지역 구분			경작 현황				임차현황	
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계 (m <sup>2</sup> )	안 (m <sup>2</sup> )	밖 (m <sup>2</sup> )	계 (m <sup>2</sup> )	벼재배 (m <sup>2</sup> )	벼이외 (m <sup>2</sup> )	휴경 (m <sup>2</sup> )	인원 (명)	면적 (m <sup>2</sup> )
합계						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읍·면·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  
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) (인)

시·도지사(농림수산식품부장관) 귀하







[별지 제12호 서식]

##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

읍·면·동 (시·군·구)	등록신청 농가				이행 농가				불이행 농가				비고	
	농가수	농지면적(m <sup>2</sup> )			농가수	농지면적(m <sup>2</sup> )			농가수	농지면적(m <sup>2</sup> )				
		계	벼재배	벼이외		휴경	계	벼재배		벼이외	휴경	계		벼재배
합계									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○ 보고절차

- 한국농어촌공사 시·군지사장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도 본부장
  - \* 한국농어촌공사 시·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, 농지별 검사 세부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
-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장 → 시·도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
-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→ 농림수산식품부장관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한국농어촌공사 시·군지사장(시·도본부장, 사장) (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,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) 귀하

## 토양검사 결과 보고

읍·면·동 (시·군·구)	등록신청 농가		점검 농가		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		비고
	농가수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농가수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농가수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
합계					1차년도( ) 2차년도( )	1차년도( ) 2차년도( )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○ 보고절차

- 농업기술센터 소장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
  - \*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,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
- 도 농업기술원장 → 시·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
- 시·도지사 → 농림수산식품부장관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농업기술센터 소장(도 농업기술원장) (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, 농림수산식품부장관) 귀하



##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

읍·면·동 (시·군·구)	등록신청 농가		점검 농가		부적합 농가		비고
	농가수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농가수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농가수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
합계		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○ 보고절차

- 농관원 출장소장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농관원 시·도지원장  
 \*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,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
- 농관원 시·도지원장 → 시·도지사 및 농관원장
- 농관원장 → 농림수산식품부장관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  출장소장 (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, 농림수산식품부장관) 귀하

##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

시·군·구	지급 대상		농약 잔류검사 부적합		토양검사 부적합		자금 소요액 (백만원)	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(온라인코드)
	인원	벼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(m <sup>2</sup> )		
00시			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 → 시·도지사
- 시·도지사 → 농림수산식품부장관
-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: 명칭과 ( )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,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·보고.
- (예)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(0574)

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) (인)

시·도지사(농림수산식품부장관) 귀하



[별지 제18호 서식]

##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

읍·면·동 (시·군·구)	자금배정액		지급 결과		비고
	인원	금액 (백만원)	인원	금액 (백만원)	
합계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○ 보고 절차

- 농협시·군지부장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
- 농협지역본부장 → 시·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
- 시·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→ 농림수산식품부장관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보고자 :       시·군지부장, 지역본부장, 중앙회장 (인)

읍·면·동장(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, 농림수산식품부장관) 귀하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현황 보고

시·군·구	합 계		부정한 방법으로 등록		지급대상자 요건 미흡		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		쌀을 미생산 (농지형상 유지)		농약·토양검사 부적합	
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
00시							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 → 시·도지사
- 시·도지사 →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

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) (인)

시·도지사(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) 귀하

[별지 제22호 서식]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

시·군·구	부당수령자 현황 (가산금 포함)			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(가산금 포함)			등록제한 현황	
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금액(천원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	금액(천원)	인원	면적 (m <sup>2</sup> )
00시								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 → 시·도지사
- 시·도지사 →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도지사) (인)

시·도지사(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) 귀하







##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

### □ 목 적

- 영농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주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
-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(이하 ‘신고센터’라 함)를 설치·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### □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

- 설치장소
  - 행정기관 : 읍·면·동, 시·군·구, 시·도, 농림수산식품부
  - 이행점검기관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한국농촌공사
- 운영기간 : 2005. 11월 ~ 별도지침 시달시까지

### □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

-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
-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, 사업시행지침서 및 부당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, 별지 제21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

## □ 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한 사항

-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
-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
-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
-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(수령)을 못한 경우

## □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

- 서면(문서)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, 전화,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21호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함
  - 방문, 전화, 팩스,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(또는 회신·질의)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
-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(단체)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(시·군·구)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
- 사업주관기관(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)은 ‘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’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(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)
  - 신고서의 처리기간·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수산식품부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

<첨부3>: 2010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
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

□ 사업목적

-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,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%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

□ 지원대상

-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
  -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    -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㎡(0.1ha) 미만인 자
    -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대상농지
  -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'98년 1월 1일부터 '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 재배)에 이용된 농지(농지법에 의한 농지)

□ 사업내용

-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
  -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포함)에게 지급
    - \*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
  -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%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

□ 자금유형

2010년 사업비(백만원, 변경될 수 있음)		
사업비 합계	고정직불금(보조)	변동직불금(보조)
992,513	704,877	287,636

□ 지원조건

-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'01년 이후 벼·연근·미나리·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,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
-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,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

□ 사업주관기관

- 시·군·자치구의 구청(산업과, 지역경제과 등)
  - 대상자 등록, 등록대장 비치, 지급요건 이행점검,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

□ 사업담당부서

- 농림수산물식품부(농가소득안정추진단, ☎02-500-1768~9)
- 시·도(농정과 농산과 등)
  - 시·군·구사업 지도·감독,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
- 읍·면·동사무소
  -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(변경)·이의신청 접수
  -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,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
- 한국농어촌공사(시·군지사)
  -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
  -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
- 시·군 농업기술센터 : 토양검사(엽분석 포함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시·군 출장소) : 농약 잔류검사
- 농협중앙회 : 기금의 관리·운용사무 수탁 관리

□ 신청기관

-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